

산업재해보상보험 [] 휴업급여 [] 상병보상연금				청구서
※ 공통란은 모두 기재하시고, 해당 신청란에 [✓] 하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				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휴업, 상병 : 7일	
산재근로자	성명	생년월일 <input type="text"/> <input type="text"/> <input type="text"/> <input type="text"/> 년 <input type="text"/> <input type="text"/> 월 <input type="text"/> <input type="text"/> 일		
	재해발생일	<input type="text"/> <input type="text"/> <input type="text"/> <input type="text"/> 년 <input type="text"/> <input type="text"/> 월 <input type="text"/> <input type="text"/> 일		
수령계좌	수령계좌를 변경 하시겠습니까? [] 예 [] 아니오			
	수령희망은행 및 계좌번호:		(예금주 :)	
	[] 보통계좌			
	[] 보험급여 전용계좌(희망지킴이-압류금지계좌)			
청구기간	년	월	일부터	년 월 일까지 (일간)
확인사항	① 청구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습니까? [] 취업함 [] 취업하지 못함			
	② 청구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았습니까? [] 예 [] 아니오			
	③ 이 재해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, 그 외 법령에 따른 배상 또는 보상을 받았습니까? [] 예 [] 아니오 ※ 배상 또는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그 내역을 작성해 주세요.			
	수령일자	수령금액	지급한 자	첨부서류
				합의서, 판결문, 영수증, 기타서류 등
자동지급신청	2회차 지급분 부터(휴업급여는 입원요양기간에 한함) 자동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자동지급을 신청하시겠습니까? [] 예 [] 아니오			
위 기재내용을 확인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. 년 월 일 청구인 (서명 또는 인) ☎ 대리인 (서명 또는 인) ☎				
<휴업급여·상병보상연금 청구서 제출 대행에 대한 동의서> 본인은 (휴업급여·상병보상연금) 청구서를 아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대행하여 근로복지공단 고용·산재보험 토털서비스(total.comwel.or.kr)를 통해 제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				
청구인	(서명 또는 인)	의료기관	(서명 또는 인)	
근로복지공단		지역본부(지사)장 귀하		

1 구비서류

● 휴업급여

1. 재해가 발생한 달을 포함한 이전 4개월간 임금대장, 연장수당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
2. 연차수당 및 상여금이 있는 경우 재해가 발생한 달을 포함한 이전 12개월 동안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


● 상병보상연금

1. 최초 상병보상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: 별지 제8호 서식의 중증요양상태진단서
2.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중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변동된 경우 : 별지 제23호 서식의 중증요양상태변동신고서

2 휴업급여·상병보상연금 청구 관련 안내사항

- 요양을 하더라도 그 기간이 3일 이내이거나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아닌 경우, 요양기간 중 취업한 시간·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 등에는 휴업급여·상병보상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.
- ※ 취업이란 재해 당시 사업(원래 직무 및 다른 직무 포함) 또는 다른 사업으로의 취업 뿐만 아니라 자영업 운영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며, 취업한 사실이 있음에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지급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부당이득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.

3 기타 서비스 안내

 공단에서는 산재근로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휴업급여 지급에 있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휴업급여·상병보상연금 자동지급	입원환자 2회분 이후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은 1회 최초의 청구로 자동지급이 되며, 별도의 청구 없이 2회분 이후부터는 자동지급됩니다. ※ 입원하다가 통원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.
휴업급여 우선지급	휴업급여청구서의 처리기한내에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산재근로자의 생계보호를 위하여 최저임금액을 1일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산정하여 우선 지급하고, 평균임금 산정 후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휴업급여 차액을 추가지급하게 됩니다.

스마트폰으로 '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하게'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 플레이스토어에서 "급여청구" 로 검색하시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.

 공단에서는 산재근로자의 재활의욕 고취 및 직업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사회 심리 재활	재활스포츠 지원	상병 및 장애 부위에 대한 운동능력 회복을 위해 수영, 헬스, 요가 등 스포츠 비용 지원(최대 3개월)
	심리상담	산재근로자의 불안, 우울, 가족 및 대인관계 등 어려움 해결을 위해 개인별 심리상담 지원
	희망찾기프로그램	요양 중에 있는 산재근로자의 요양단계별(입원, 통원) 집단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심리안정 지원
직업 재활	사회적응프로그램	미취업 상태에 있는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사회생활 및 직업복귀를 위한 집단프로그램 지원
	원직장복귀 지원	원직장복귀를 희망하는 산재근로자 또는 사업주에게 재활상담, 소견서 무료발급등 의 서비스 제공 산재근로자(장애등급 제12급 이상자 또는 예정자)를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거나 '적응훈련(요양중에도 인정) 또는 재활운동' 을 시킨 사업주 에게 직장복귀지원금 등 지원
	재취업 지원	재취업을 희망하는 산재근로자(장애등급 제12급 이상자 또는 예정자)에게 직업훈련 지원 및 취업 알선